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6

발의연월일: 2021. 2. 16.

발 의 자:서범수·박덕흠·정운천

임이자·김희곤·박성민

전봉민 · 윤영석 · 김승수

박대수 · 최형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 확대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 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 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난지원금 대체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유지하면 서 자연재해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 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업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과 관리 및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풍수해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같 은 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 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 |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 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 --.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 업재해보험법 | 에 따른 농어업 |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 <신 설> 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4조(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제24조(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 ③ (생 략)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 관 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 따른 통계의 집적과 관리 및 위 의 집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 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장관이 정한다.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저 ①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 설>

② (생 략)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u>다.</u>
세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수령한 풍수해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
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같은
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